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 | | |
|---|---|--|
| 사 | 건 | 2020가합11930 손해배상(기) |
| 원 | 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
| 피 | 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박다희, 유혜인, 김용범, 강준우 |
| 변 | 론 | 종 결 2021. 4. 14. |
| 판 | 결 | 선 고 2021.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은 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와 피고 모두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1년간 자동연장 되었고,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다시 자동연장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31.경 피고에게 2017. 11. 30.자로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2. 8.경 위 사직서를 반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8.경 피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총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재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



다. 원고는 2019. 5.경 1차 및 2차의 주식매수선택권 9,700주 및 2,000주를 행사하였다.

| | 1차 | 2차 | 3차 |
|------|-------------------|-------------------|-------------------|
| 부여일자 | 2016.3.30. | 2017.3.30. | 2019.3.29. |
| 부여수량 | 9,700주 | 2,000주 | 3,000주 |
| 행사가액 | 1주당 4,200원 | 1주당 6,000원 | 1주당 6,000원 |
| 귀속기간 | 16.3.30.~18.3.29. | 17.3.30.~19.3.29. | 19.3.29.~21.3.28. |
| 행사기간 | 18.3.30.~21.3.29. | 19.3.30.~22.3.29. | 21.3.29.~24.3.28. |

마. 원고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9. 11. 30.자로 퇴직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에 따라 위 3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주는 실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에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9. 11. 30.자로 퇴직함에 따라 3차 주식매수선택권 3,000주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식매수선택권 미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추후 임원진 합의 및 주주총회 특별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단에는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를 제공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항 후단에는 '총 0.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단의 '계약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를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후단의 '총 0.9% 이내' 및 '주요임원진의 최종합의 및 특별주총결의를 통한 최종 확정'이라는 내용과 모순이 된다.

②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중 하나인 '주요 마일스톤'은 그 의미가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곧,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③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여 받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3,000주 미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3. 29.경 피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3,000주를 부여 받은 사실, 그 행사기간은 2021. 3. 29.부터 2024. 3. 28.까지인 사실, 원고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고용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9. 11. 30.자로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2019. 3. 29.경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3,000주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조경진

 판사 조수민